

# 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2520호

2026년 4월 30일 (목)

## 차 례

### 고시 · 공고

- 파주시 고시 제2026-186호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 인가 고시 ..... 1
- 파주시 공고 제2026-184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..... 4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파 주 시

##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9-5088호(2009.06.12.)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13-44호(2013.04.26.), 제2017-87호(2017.05.02.), 제2018-107호(2018.05.11.), 제2020-240호(2020.9.3.), 제2026-86호(2026.2.27.)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18-158호(2018.07.24.), 파주시 고시 제2025-420호(2025.08.2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되고, 파주시 고시 제2020-115호(2020.04.22.), 파주시 고시 제2023-372호(2023.10.27.), 파주시 고시 제2025-506호(2025.10.15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고시된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,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. 04. 30.

파 주 시 장

###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### 2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37-15번지 일원
- 나. 면 적 : 35,804.55㎡ (확정측량면적)

###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황유성)
- 나. 주 소 :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19, 2층(금촌동)

###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년 4월 22일 (변경 2025년 10월 15일)

###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  - 건축계획

구분	주용도	층수 (층)	건축면적 (㎡)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주차대수 (대)	비고
변경 전	공동주택 및 복리시설	지하3/ 지상21~29	6,154.9408	112,084.6487	24.9450 (상업용지 4.40)	282.98 (상업용지 15.92)	1,162	
변경 후	공동주택 및 복리시설	지하3/ 지상21~29	6,154.9408	112,084.6487	24.8347 (상업용지 4.40)	281.73 (상업용지 11.50)	1,162	

-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기반시설

(단위:㎡)

구분	계	공동주택	정비기반시설					종교용지
			소계	도로	공원	녹지	주차장	
변경 전	35,772.00	24,674.00	7,634.00	3,879.00	1,133.00	2,032.00	590.00	3,464.00
변경 후	35,804.60	24,728.60	7,622.60	3,912.50	1,142.70	1,995.10	572.30	3,453.40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- 권리자별 관리처분 (변경없음)

(단위:인)

구분	권리자별	대상	분양신청자					청산	그밖의 처분
			소계	1주택	2주택	주택+상가	상가		
변경 전	계	236	94	82	2	2	8	142	
변경 후	계	236	94	82	2	2	8	142	

- 공동주택 및 상가 분양계획

▶ 변경 전

(단위:세대/㎡)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상가면적
	계	26.91	46.79	59.85	59.83	74.97	
계	1,055	450	211	305	64	25	3,929.2305 73호
조 합 원	89	1	8	62	2	16	
보 류 시 설	63	5	6	41	2	9	
공 공 지 원 민 간 입 대	850	391	197	20 2	60	-	
공 공 입 대	53	53	-	-	-	-	

▶ 변경 후

(단위:세대/㎡)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상가면적
	계	26.91	46.79	59.85	59.83	74.97	
계	1,055	450	211	305	64	25	3,929.2305 73호
조 합 원	89	1	8	62	2	16	442.0902 10호
보 류 시 설	3	-	-	2	-	1	3,487.1403 63호
일 반 분 양	60	5	6	39	2	8	
공 공 지 원 민 간 임 대	850	391	197	20 2	60	-	
공 공 임 대	53	53	-	-	-	-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(단위:㎡)

구분	신 설					용 도 폐 지	
	소계	도로	공원	녹지	주차장	소계	도로
변경 전	7,634	3,879	1,133	2,032	590	2,200	2,200
변경 후	7,622.6	3,912.5	1,142.7	1,995.1	572.3	2,200	2,200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: 철거완료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파주시청 주택과(☎031-940-4776) 및 파주금촌2동제2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(☎031-957-4115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

##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우리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69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하고자 하였으나,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1. 공 고 명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6. 4. 30.(목) ~ 5. 15.(금) (15일간)
3. 공고장소: 시보 및 홈페이지
4. 법적근거: 「하천법」 제33조 및 제69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
5. 공시송달 대상
6. 고지사항

가. 상기 위반사항 및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「하천법」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며,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및 관련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당사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.

7. 의견제출: 불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'26. 5. 15.(금)까지 제출(방문 또는 우편)  
- 주 소: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, 2층 하천관리과 (물순환시스템수처리장)
8. 문 의 처: 경기도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 하천행정팀(☎ 031-940-5063)

2026년 4월 30일

# 파 주 시 장

<b>붙임</b>	<b>공시송달 공고대상</b>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연번	행위자	하천명	불법점용위치	위반내용
1	미상	공릉천	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29-10	경작
2	미상	공릉천 금촌천	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944-1	경작, 기타(적치물 등)
3	미상	공릉천 금촌천	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943	경작
4	미상	공릉천	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625-2(94-3)	경작

# 1.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29-10

위치도



현장사진(경작)





### 3.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943

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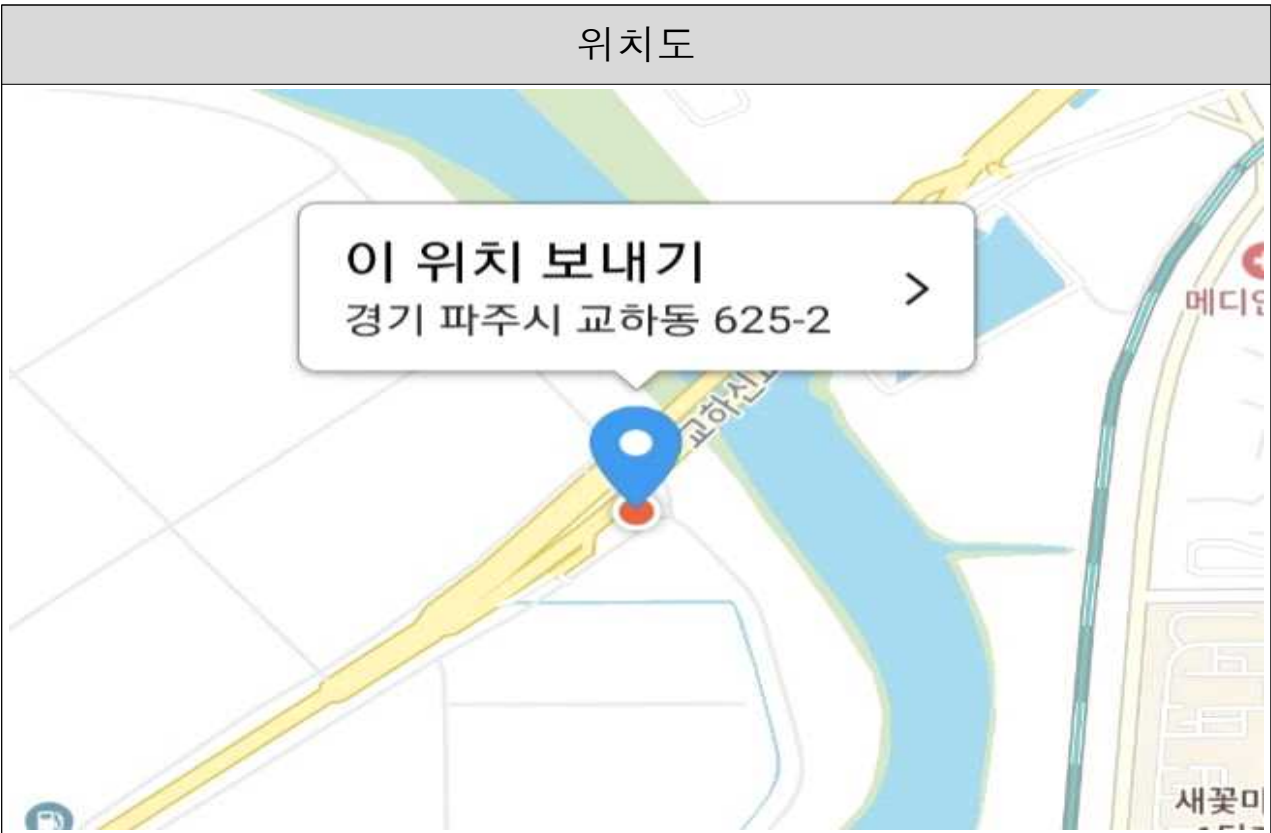


현장사진(경작)



4.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625-2(94-3)

위치도



현장사진(경작)



## 파 주 시

수신자 하천 불법점용 행위자 귀하  
(경유)

###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	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미상					
	주소	미상	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1. 처분원인 : 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국가·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2. 위반내용 가. 위치 : 위치도 참조 나. 행위내용 : 국가·지방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 및 불법 물건 적치 다. 행위상세 :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	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원상회복 명령	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「하천법」 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, 「하천법」 제69조(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)						
의견제출	제출처	기관명	파주시	부서명	하천관리과	담당자	문채혁
		주소	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111, 2층			전화번호	031-940-5063
		전자우편주소	hyuk1027@korea.kr			팩스번호	031-940-5059
	제출기한	2026년 5월 15일까지					

#### <의견제출 시 유의사항>

-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.
-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파 주 시 장